

의 안 번호	2139	<b>[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5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8. 25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9. 8.(금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국장 김세동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 사항 및 직원 제안사항 반영 등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복지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 연가 전환 조항 신설(안 제15조)
- 연간 3일의 자기계발 휴가 조항 신설(안 제16조제8항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, 제7조의 7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 사항 및 직원 제안 사항 반영 등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복지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

24 (제258회-본회의 제2차부록)

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 거 법 규

##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
- 2.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

바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

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**제7조의7(특별휴가)**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